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 LEADING DISPUTE RESOLUTION WORLDWIDE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지침서¹

I - 목적

1. 본 지침서는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에 코로나19 사태가 ICC 중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이하 "본 지침서").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를 심대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보건재난 사태입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많은 ICC 중재사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쟁들을 야기할 것이며, 이 새로운 분쟁들 또한 안전상의 우려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 또는 늦추기 위해 시행되는 공중보건 조치들로 인하여 해결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는 ICC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을 통해 이미 가용한 기존의 사건관리도구를 잘 활용하거나, ICC 국제중재법원(이하 "중재법원")이 내부절차 간소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추가 조치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장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재법원은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계속해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I)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가 보다 높은 효율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지연을 줄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도구들을 환기시키고, (II) 코로나19 관련 고려사항에 비추어 회의 및 심리(전화회의,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 및 심리의 진행을 포함합니다, 이하 "화상심리")의 준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지침서는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ICC ADR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 -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의 완화

3. 중재법원은 업무중단 없이 계류 중인 중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사건도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¹ 이 한국어 번역본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팀(김세연, 최준학 변호사)이 준비해 주셨고, ICC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중재법원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이는 중재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이 “중재사건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나아가 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해 중재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진행할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위 중재규칙 및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지연을 포함하여, 중재절차에 초래된 지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조치를 고려할 의무를 함께 공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재절차의 일정한 부분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저히 지연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 접수된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첫 사건관리회의의 준비 및 시점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최초 교신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함으로써, 일체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합의나 판정문 초안 작성 작업은 원격으로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합의를 수행하고 일체의 적합한 연락수단을 동원하여 판정문 초안 작성을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재법원에의 판정문 초안 제출기한과 부당한 절차지연 시 중재인 보수를 감액하는 중재법원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질병과 같이 순수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발된 특정 상황이 절차지연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위 정책의 적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당사자들에 대한 비용 예납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유념할 것입니다.

A - 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

6.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를 위해 고안된 사건관리기법의 이용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7. 이러한 기법의 상당수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재법원은 중재규칙 별표 IV와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수행 관련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대한 지침\(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이하 “중재수행지침”)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ICC 중재 및 ADR 위원회(ICC Commission on Arbitration and ADR) 보고서인 "[중재에서의 시간 및 비용 통제\(Controlling Time and Costs in Arbitration\)](#)" 및 "[효과적인 중재 관리 – 사내변호사와 기타 당사자 대표를 위한 지침\(Effec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 A Guide for In-House Counsel and Other party Representatives\)](#)"에서도 추가적인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중재규칙 제24조 제3항은 효과적인 사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판정부가 사건관리회의를 추가 진행하는 등 적절한 절차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일정표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하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재수행지침 74번 내지 79번 문단에 의거하여 특정 청구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신속한 종결 처리;
 - 당해 중재사건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개 이상의 일부 판정을 내림으로써 단계별로 분쟁의 쟁점을 해결;
 - 해당 분쟁 전체 또는 개별 쟁점이 심리기일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파악;
 - 당사자들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당 쟁점을 해결하는 데 제일 효율적인 수단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간절차회의를 개최;
 - 계약상 책임 제한의 적용 여부 또는 계약 비서명자의 중재 절차 포함 여부와 같이 잠재적으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문서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당해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서로 엄격히 국한된 문서제출 절차만을 거쳐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
 - 증인/전문가 증거 없이 해결될 수 있거나, 상대방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서면 질의 및 증인/전문가의 서면 답변만을 토대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을 파악;
 -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나 조사가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나 전문가들의 공동 보고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당사자가 선정한 전문가 대신 중재판정부가 직접 전문가를 선정(ICC 중재판정부는 ICC 국제 ADR 센터(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가 선정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무상으로 활용 가능; [전문가 및 중립인사의 제안을 위한 ICC 전문가 규칙\(ICC Expert Rules for the Proposal of Experts and Neutrals\)](#) 제3조 별표 II 참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회의와 심리에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 이용;
 - 쟁점의 범위를 한정하고 좁힐 수 있도록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의된 사실관계 연표, 다툼이 있는 쟁점의 공동목록 또는 기타 유사한 공동제출 문서들을 확정할 것을 요청;
 - 서면 제출의 횟수 및 분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제한할 경우 그 구체적 방식에 관한 검토; 및
 - 당사자들이 ICC 신속절차규칙(ICC Expedited Rules Provisions)의 채택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9. 위의 절차적 옵션들에 관한 예시 목록은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가 잠재적 절차 지연,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야기된 지연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절차적 지장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교신하여,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B - 서류 송달 및 통지

10. 중재법원 사무국(이하 "사무국")도 효율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11. 사무국은 [2020. 3. 17.자 사무국 서신\(Secretariat's communication of 17 March 2020\)](#)을 통해 신규 중재신청서(관련 증거서류 포함) 및 기타 신청 관련 서류들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중재신청이 제출된 후 이메일을 통한 중재신청서의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신청인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중재규칙 제3조 제2항).
12.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중재수행지침 161번 문단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중재절차요지서(Terms of Reference)와 그 부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하도록 권장됩니다.
13. 하드카피 문서의 제출에 관한 최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을 위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교신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중재수행지침 8번 문단은 사무국과 주고받는 교신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14. 당사자들에게 적시에 중재판정문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와 사무국 간의 적극적인 교신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 원본에 서명을 시작하는 즉시 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무국의 사건담당변호사는 원본을 송부할 사무국의 수신처를 중재판정부에 고지해야 합니다.
15. 관련된 강행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들은 다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i)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문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서명할 것 및/또는 (ii) 중재규칙 제35조(중재수행지침 164번 문단)에 의거하여 사무국이 그러한 일체의 부분을 단일한 전자파일로 취합한 후 이메일 또는 송부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 당사자들은 가능할 경우 중재판정문의 전자적 통지에 동의할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문을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해서는 안됩니다.

III - 화상심리의 개최에 관한 지침

16. 여행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회의와 심리의 개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를 개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7.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는 심리 또는 회의를 연기해야 할지, 특별한 주의조치 하에 실제로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화상심리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A - 회의 또는 심리 진행 방법

18.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적절한 절차적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해당 회의 또는 심리의 성격과 소요시간, 사건의 복잡성 및 참가자 수,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부적절한 또는 과도한 지연을 초래할지 여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적절한 심리 준비를 위한 필요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19. 만약 단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회의/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나, 현 상황에서는 진행 불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의 또는 심리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경우 본 지침서에 서술된 절차적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당해 중재사건의 일부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20. 만약 단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회의/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 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심리가 열리는 물리적 장소에 적용될 구체적인 규칙과 권고 지침,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위생 조치(특히 참가자들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 마스크와 세정제 비치 및 기타 적합한 조치)를 협의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21. 만약 화상심리 방식에 의해 진행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아래에 언급되고 첨부 부록에 기재된 항목들을 포함하여, 화상심리 방식의 진행에 있어 고유한 특징들을 고려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또한 계획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2. 만약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또는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 18번 문단에 언급된 바를 포함한 관련 상황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중재규칙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재판정이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당해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과 협의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적 조치들을 채택”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가지는 광범위한 절차적 권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 중재규칙과 실무 가이드는 사건관리회의와 관련한 중재규칙 제24조 제4항,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와 관련한 중재규칙 별표 VI 제3조 제5항, 처분적 쟁점과 관련한 중재수행지침 77번 문단 등에서 화상심리의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23. 중재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제출서면 및 일체의 근거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in person) 만나 심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변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심리가 화상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in person)" 시행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24. 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당해 중재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강조표시 추가)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규칙 제25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가 해당 분쟁에 대해 제출 서면 및 서류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간 심리도 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동 조항의 프랑스어본은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Après examen des écritures des parties et de toutes pièces versées par elles aux débats, le tribunal arbitral entend *contradictoirement* les parties si l'une d'elles en fait la demande; à défaut, il peut décider d'office de leur audition". 이러한 이유에서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 가이드(Secretariat's Guide to ICC Arbitration)는 "중재판정부가 제25조 제2항을 대면 심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화상 또는 전화회의의 이용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당해 중재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5. 그동안 중재판정부들은 종종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안에 대하여 최소 1회의 대면 심리를 진행하도록 결정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하였고, 대면 심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당하거나 심지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각 중재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수립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중재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최우선적인 의무를 다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접근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B - 사이버 규약

26. 모든 화상심리를 위하여는 관련 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조치들(이른바 사이버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위 조치들은 해당 심리의 비공개 및 중재절차 내 전자적 교신과 전자문서 플랫폼의 비밀유지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27. 본 지침서 부록 II에는 화상심리의 준비를 다루는 절차명령의 사이버 규약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예시조항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C - 절차 관련 이슈

28. 화상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당사자가 균등한 대우를 받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심리기일 일정, 시작 및 종료 시각, 각 심리기일의 휴식 시간 및 일일 진행시간을 정함에 있어 각 상이한 시간대;
 - 참가자들의 위치 관련 세부 실행사항으로서, 참가자들의 총 인원수, 심리에 참가하는 원격지의 수, 참가자들이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모이는 정도, 중재인들이 서로 및/또는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모이는 정도, 휴게 공간의 사용 및 통제 가능 여부 등;
 - 실시간 속기록 또는 다른 형식의 기록방법 이용;
 - 순차 또는 동시 통역사의 활용;
 - 기술 관리자 등을 활용한 전 참석자들의 출석 및 신원 확인 절차;
 - 구두진술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실 증인 및 전문가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
 - 화면공유기능 등을 이용한 설명보조자료 활용; 및
 - 모든 참석자들이 접근 가능한 문서공유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전자심리기록의 이용.
29. 화상심리 규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본 지침서 **부록 I**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0. [파리 소재 ICC 심리센터](#)는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 및 전자심리기록 설비를 위한 옵션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설비들을 운용함에 있어 중재절차의 무결성, 비밀유지 및 적절한 정보보호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기술지원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ICC는 대부분의 주요 중재지에 소재한 다른 심리센터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그러한 센터에서 제공하는 화상심리설비에 접근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및 가이드를 받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들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에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fohearingcentre@iccwbo.org.
31. 화상심리를 위한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들 간의 비교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일부 심리센터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심리 솔루션에서부터 라이선스 기반의 공개 플랫폼, 그리고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맞춤형이든 라이선스 기반이든, 유료 화상회의 플랫폼들은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 플랫폼에 비해 더 나은 보안,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2. 중재판정부는 화상심리에 쓰이는 모든 영상공유 플랫폼이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며 최대한의 보안 수준으로 설정된 것임을 당사자들과 확인하여야 합니다. ICC는 Microsoft Teams, Vidyocloud 및 Skype for Business를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였습니다. ICC는 중재판정부가 위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회의(또는 심리)에 참여하며, 미팅 내 음성 및 영상 기능, 그리고 화면공유기능을 작동함에 있어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최근 중재사건에 사용된 다른 플랫폼에는 Zoom, BlueJeans, 그리고 GoToMeeting 등이 있습니다.

33. 전자심리기록을 위한 다양한 문서공유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일부 심리센터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들(Opus, Transperfect 및 XBundle 등)이 제공하는 맞춤형 심리 솔루션에서부터 라이선스 기반의 공개 플랫폼, 그리고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맞춤형이든 라이선스 기반이든, 유료 문서공유 플랫폼들은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 플랫폼에 비해 더 나은 보안,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4. ICC는 본 지침서에 언급된 제3의 업체들을 승인하거나 이들에 관한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는 해당 중재사건에서 이들 각각의 적합성에 대하여 직접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록 I

화상심리 규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A - 기일 전 계획, 범위 및 세부 실행사항

- (i) 심리 안건이 되어야만 하는 핵심 쟁점과 “서면으로만(documents only)”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의 구분 및 판별;
- (ii) 참가자들(중재인, 당사자, 법률대리인, 증인, 전문가, 행정비서, 통역사, 속기사, 기술자 등)의 수와 명단에 합의;
- (iii) 화상 방 당 참가자 수 및 모든 참가 방에 360도 회전 뷰가 필수적이거나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합의;
- (iv) 중재인들 간에, 그리고 각 당사자 측에서 심리 도중 자신들끼리 상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화상 방에 관한 합의;
- (v) 모든 로그인 위치와 접속지점 확인;
- (vi) 화상회의 개시 시점에 각 화상 방에 출석한 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할 것에 대한 합의; 및
- (vii) 상기 관점에서, 상이한 시간대들을 고려하여 심리기일 일정, 소요시간 및 일일 일정표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 간 협의 및 합의.

B - 기술적 이슈, 사양, 요건 및 지원 담당 직원

- (i) 다음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협의:
 - 선호하는 플랫폼 및 기술(그러한 플랫폼과 기술에 대한 합법적 접근을 포함);
 - 각 장소에서의 순조로운 접속(음성 및 영상), 충분한 가시성과 조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사양 및 기술적 요건;
 - 각 장소에서 특정 장비(전화기, 예비용 컴퓨터, 접속신호를 강화/확장하기 위한 장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 장비 또는 시청각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여부;
- (ii) 선정된 플랫폼 및 기술의 호환성에 대한 예비 점검;
- (iii) 심리에서 사용될 기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한 사용지침서의 필요성 검토;
- (iv) 갑작스러운 기술적 장애, 접속차단, 전원차단의 경우 시행할 비상조치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대체 소통채널 및 화상기술 지원); 및
- (v) 심리기일의 직전 달에 접속상태와 스트리밍을 점검하기 위해 최소 2회의 모의세션을 시행하며, 이때 마지막 세션은 심리기일 직전일에 실시하여 모든 면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C -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및 보안

- (i) 화상심리가 참가자들에게만 공개되고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협의;
- (ii) 모든 참가자들을 구속하는 접속 및 비밀유지 관련 서약 내용에 합의;
- (iii)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
 - 화상심리의 녹화기록 여부(시청각적 기록, 기록의 비밀유지 및 음성/영상기록의 서면 속기록에 대비한 가치 등);
 - 특정 참가자들의 접근 또는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정보보호 요건 또는 표준의 유무; 및
 - 해킹, 불법 접속 등에 대비하여 화상심리의 무결성과 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호화 요건.

D - 온라인 예절 및 적법절차 고려사항

- (i) 가상환경에서 참가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실무에 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주 발언자 지정, 변론의 방해 금지, 플랫폼과 대역폭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이용 준수, 접속을 방해하거나 불법적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사용 금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합의 등;
- (ii) 시험한 플랫폼과 기술이 당사자들이 시험한 상태대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당사자/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확보;
- (iii) 화상심리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확인, 또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화상심리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및
- (iv) 화상심리 전 또는 화상심리 도중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고지.

E - 증거의 제출 및 증인과 전문가 신문

- (i) 구두변론의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 (ii) 법률대리인이 온라인 변론 및 증거의 제출에 멀티스크린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그리고 화상 환경에서 증거의 설명보조자료 제출 및 제시를 위한 방식에 합의;
- (iii) 증인 및 전문가 신문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증인/전문가의 소환 및 신문 순서, 접속시각 및 참석시간, 화상 환경에서의 격리, 대화창 또는 비밀교신채널에서 증인/전문가 및 당사자/법률대리인 간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소통의 허용/금지, 온라인 환경에서 신문진행자와 증인/전문가 간의 상호작용 등); 및
- (iv) 화상 환경 내 속기록 및 화상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속기사와 통역사의 이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부록 II

화상심리의 준비를 다루는 사이버 규약 및 절차명령을 위한 예시조항

I. 참가자들

“중재판정부는 (날짜 및 시간 기입)(으)로 예정된 심리가 화상회의로 진행될 것을 확인하고 명한다.

당사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 참가자들(“심리참가자들”)이 아래에 명시된 장소에서 심리에 참석한다:

- a. 신청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b. 신청인의 법률대리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c. 피신청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d. 피신청인의 법률대리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e. 중재판정부
(중재인들의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f. 증인 / 전문가 / 속기 업체 / 지원 담당 직원 및 기술자 / 기타 참가자(해당되는 경우)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각 심리참가자는 자신의 로그인 장소 또는 접속지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모든 심리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지한다.”

II. 기술적 이슈, 사양, 요건 및 지원 담당 직원

“당사자들은 모든 심리참가자들이 선정된 플랫폼을 통하여 심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충분한 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링크 접속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하여 본 절차명령일로부터 __일 이내에 상호 합의한 신뢰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동 목록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목록에서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일로부터 __일 이내에 다음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 (i) 계속적이고 원활한 시청각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사양 및 기술적 요건(사용할

운영체제의 유형, 프로세서 속도, RAM 용량, 전송속도, 네트워크 대역 등);

- (ii) 심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디스플레이 스크린, 고해상도 웹캠, 소음제거 마이크폰 또는 헤드폰, 전화기, 예비용 컴퓨터, 접속 신호를 강화/확장하기 위한 장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 장비 또는 시청각 보조기구)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 (iii) 접속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에 고유한 요건.

상기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위 문단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_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각자의 제안과 각자가 주장하는 사양 및 요건이 선정된 화상회의의 제공자/플랫폼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각 제안은 본 절차명령 제_호 부록 (1)로 첨부된 양식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공동 제안 또는 개별 제안을 검토하고 심리에 채택될 합리적 요건 및 기술 사양을 확인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2인의 IT 전문가 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지명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전문가들은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 객관적으로 중재판정부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동 IT 전문가들이 제공할 업무 및 지원내용을 기술한 필요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상기 사양 및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합의하거나 각자의 제안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할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이 (i) 선정된 제공자/플랫폼의 요건 및 (ii)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특정 장소에 고유한 요건과 양립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정된 화상회의 서비스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튜토리얼 일정을 즉시 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은 화상회의의 제공자/플랫폼 선정일로부터 _일 이내에 그러한 튜토리얼을 위한 일정을 중재판정부에 제안하여야 한다. 동 튜토리얼은 심리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및 툴의 개요를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갑작스러운 기술적 장애, 접속차단, 전원차단, 또는 심리에 대한 기타 장애발생 시 시행할 세부 비상조치에 관하여 본 절차명령의 일자로부터 _일 이내에 협의 및 합의(하거나 별도 제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대표, 각 중재인 및 심리의 여타 심리참가자들은 (i) 심리에 채택된 장비 및 기술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ii) 심리 직전 달에 심리 조건에 맞는 모의접속을 하기 위해 최소 2회의 시험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와 그러한 시험운영의 날짜, 시간 및 소요시간을 조율 및 합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상의 의무 이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원 담당 직원을 사용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합의한다.

상기 요건은 두 지점 간 화상회의, 다지점 간 화상회의, 웹 기반 화상회의, ISDN 연결 화상회의 등 사용되는 화상회의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III.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및 보안

“원칙적으로, 심리의 출석은 본 절차명령 제__호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조건에 의거한 심리참가자들로 제한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리 진행을 돕기 위하여 심리참가자들과 협업하는 기술 컨설턴트/지원 담당 직원 또한 심리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심리참가자들로 인식된다. 어떤 당사자가 심리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다른 자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 당사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그러한 참석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동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심리의 여하한 부분도 녹화(음성 녹음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리의 녹음은 공동 속기록 작성 목적으로 고용된 속기사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녹음에 대한 제안은 늦어도 심리의 관련 부분이 진행되는 때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요청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에 대한 공식 기록은 당사자들이 정정 및 검토 작업을 거친 서면 속기록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심리참가자들이 소재하는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중 프라이버시, 비밀유지, 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과 관련하여 장애나 준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리기일 전에 충분한 기간(적어도 2주 전)을 두고 공동으로 이를 검토 및 제기할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심리참가자들의 접근 또는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요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어느 당사자가 심리의 무결성을 확보하거나 사이버공격, 침투 또는 심리에 대한 무단 접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우려를 할 만한 사유를 알게 되는 즉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IV. 온라인 예절 및 적법절차 고려사항

“화상회의를 통한 성공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조율의 정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참가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i) 자신의 주 발언자 지정;
- (ii) 다른 발언자에 대한 방해 자제;
- (iii) 화상회의 설비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 (iv) 접속을 방해하는 장비 사용 회피;
- (v) 무단 녹화/녹음 금지;
- (vi) 심리 도중 시간낭비 자제;
- (vii) 발언하지 않을 때에는 마이크를 음소거 모드로 설정;
- (viii) 자신이 심리에 참가시키는 심리참가자들 또한 이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및
- (ix) 심리의 절차적 효율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조치 또는 실무 채택.

중재판정부는 제1일차 심리기일 서두에서 행정사항을 논의하면서 당사자들과 협의 하에 이의제기의 방식을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 일자로부터 _일 이내에 서면으로 (i) 당사자들이 상기 시험운영을 완료하였으며, (ii) 서비스 제공자, 장비, 기술 사양 및 요건이 심리 참여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V. 증거의 제시 및 증인과 전문가 신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구두변론에서 증거의 설명보조자료 사용 및 기록상의 특정 증거의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해당 증거의 설명보조자료가 모든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들) 및 심리의 해당 부분에 참석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심리참가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거 및 설명보조자료의 제시에 멀티스크린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멀티스크린이 필수 장비 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 일자로부터 _일 이내에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여야 한다:

- (i) 증인/전문가의 소환 및 신문 순서;
- (ii) 각 증인/전문가의 접속시각 및 참석 가능 시간;
- (iii) 증인/전문가의 화상 환경 내 격리를 위한 방식(해당되는 경우);
- (iv) 대화창 또는 비밀교신채널에서 증인/전문가 및 당사자/법률대리인 간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소통의 허용/금지;
- (v) 증인/전문가가 자신의 장소에서 타인과 동반 참석할 것인지 여부 및 증인/전문가가 진술하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

- (vi) 증인/전문가가 통역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지 여부, 해당 통역사가 화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 통역이 동시 또는 순차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신문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 추가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

상기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기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__일 이내에 각자의 제안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공동 제안 또는 개별 제안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심리가 서면기록되는 데에 동의하며, 당사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속기록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역량을 갖춘 화상 속기록 제공자/속기사를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확약한다. 속기록 이용에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 추가 장비가 상기에 따라 확정된 필수 장비 목록에 포함될 것에 동의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증인/전문가가 'hot-tubbing' 방식의 신문에 출석하도록 당사자들과 합의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합의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증인/전문가가 'hot-tubbing' 방식 신문의 일정 및 시간 동안 동 신문에 충실히 참석하고 해당 절차가 중재판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절차명령에 대한 부록

기술 요건

[당사자들과 추후 협의/합의 - 특정 사건용]

	당사자 xxx	당사자 yyy	제공자/플랫폼의 요건	중재판정부 결정
시스템 사양				
접속 요건				
하드웨어 및 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타 요건				